

의안번호	제797호
의결 연월일	2024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 지방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

발의자	오영탁 의원 등 7인
발의연월일	2024년 11월 15일

충청북도 지방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

(오영탁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797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24년 11월 15일

발의자 : 오영탁, 최정훈, 안지윤,
김국기, 박재주, 안치영,
조성태

1. 제안이유

- 지방행정동우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근거법률인 「지방행정동우회법」이 2020년 3월 31일 시행됨에 따라 충청북도 및 충청북도 내 시·군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공무원들이 행정동우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동우회 정관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들을 규정함(안 제3조).
- 동우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구분하고, 정회원은 충청북도 및 충청북도 내 시·군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공무원으로 하고, 명예회원은 충청북도 및 충청북도 내 시·군에서 근무하고 있는 현직 공무원 등으로 정함(안 제4조).
- 동우회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 증진을 위한 사업, 지역 주민을 위한 봉사활동, 회원 간의 친목 도모를 위한 사업, 회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함(안 제6조).
- 동우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와 정관 또는 회칙으로 정하는 수입으로 충당하고,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보조금을 지급할

수 있도록 하며, 보조금을 지급한 경우 이에 관한 서류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(안 제7조 및 제8조).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지방행정동우회법」
- 나. 관련부서 : 행정국 행정운영과
- 다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- 라. 조례안예고 : 예고대상(의회 홈페이지 게시 예정)

충청북도 지방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행정동우회법」에 따라 설립되어 회원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 증진에 기여하는 충청북도 지방행정동우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“충청북도 지방행정동우회”(이하 “동우회”라 한다)란 「지방행정동우회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5조에 따른 지방행정동우회 충청북도지회를 말한다.
2. “회원”이란 법 제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동우회에 가입한 사람을 말한다.
3. “사무소”란 동우회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공간을 말한다.

제3조(정관) 동우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동우회 설립 목적
2. 동우회 명칭
3. 동우회 사무소의 소재지
4. 동우회 사업에 관한 사항
5. 회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
6.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

7. 집행기관과 그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
8. 자산·회비 및 감사에 관한 사항
9.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
10.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
11. 그 밖에 동우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

제4조(회원의 구분) ① 동우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.

② 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. 다만, 교 육공무원 및 소방공무원은 제외한다.

1. 충청북도(이하 “도”라 한다)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공무원
2. 도 내 시·군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공무원

③ 명예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.

1. 「지방공무원법」에 따라 도 및 도 내 시·군 소속으로 재직 중인 공무원
2. 그 밖에 법 제4조에 따라 명예회원의 자격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

제5조(의무) ① 동우회는 어떠한 정치활동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② 동우회는 회원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
제6조(사업) 동우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.

1.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 증진을 위한 사업
2. 지방행정 및 자치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3. 충청북도민을 위한 공익 봉사 활동
4. 회원 간의 친목 도모를 위한 사업
5. 회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
6. 그 밖에 동우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
제7조(재정) ① 동우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와 정관 또는 회칙으로 정하는 수입으로 충당한다.

②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가 제6조제2호 및 제3호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8조(감독) ① 도지사가 제7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② 동우회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 사용에 관한 서류 제출 및 그 밖에 요청 사항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.

제9조(준용) 보조금 신청, 교부, 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를 따른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련법령 발취

□ 지방행정동우회법

제3조(정관) 동우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목적
2. 명칭
3. 사무소의 소재지
4. 사업에 관한 사항
5. 회원의 권리·의무에 관한 사항
6.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
7. 집행기관과 그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
8. 자산·회비 및 감사에 관한 사항
9.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
10.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
11. 그 밖에 동우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

제4조(회원의 자격) ① 회원은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.

② 정회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으로 하고, 명예회원은 「지방공무원법」에 따른 현직 공무원 및 동우회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지방행정분야의 전문직 종사자로서 동우회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.

③ 정회원과 명예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우회에 대한 권리 및 의무를 가진다.

제5조(조직 등) ① 동우회는 중앙회, 지회 및 분회를 둔다.

② 동우회의 중앙회와 중앙지회는 서울특별시에, 지회는 특별시청·광역시청·특별자치시청·도청·특별자치도청 소재지에, 분회는 시청·군청·구청 소재지에 각각 둔다. 다만,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지역에 둘 수 있다.

③ 동우회는 어떠한 정치활동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비용추계서

1. 사업개요

- 「지방행정동우회법」에 따라 충청북도 및 충청북도 내 시군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공무원들이 행정동우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함.

2. 관련조문

제6조(사업) 동우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.

1.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 증진을 위한 사업
2. 지방행정 및 자치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3. 도민을 위한 공익 봉사 활동
4. 회원 간의 친목 도모를 위한 사업
5. 회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
6. 그 밖에 동우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
제7조(재정) ① 동우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와 정관 또는 회칙으로 정하는 수입으로 충당한다.

- ②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가 제6조제2호 및 제3호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3. 비용추계 제외 사유

- 첨부제외 관련규정
 - 「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11조(비용추계서 작성대상)제4항제1호
- 충청북도 행정동우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의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업이 규정되지 않아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워 비용추계서 제외사유에 해당함.